

#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52호 2022. 12. 7.(수)

##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2-1944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2-2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고성천-가뭄대응 농업용수공급 관로 매설) ..... 35

화 람									
--------	--	--	--	--	--	--	--	--	--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2-1944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7.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
-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미비점 보완
- 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 구체화(안 제4조)
- 나. 법령의 위임없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 삭제(안 제4조의3)
-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안 11조)
- 라. 토석 매각대금 임의 산출 규정 정비(안 제29조)
- 마. 건물 일부 사용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임의 산출 규정 정비(안 제30조)
- 바.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정한 청사 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에 따라 면적 정리 및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관련 내용 추가(별표)
- 사. 용어 정비: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재무과 재산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재무과
- 2) 전화: (055)670-2294, 팩스: (055)670-22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 재산담당 [전화: (055)670-229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고성군 조례 제 호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군수로 하고”를 “부군수가 되고”로, “부서장”을 “담당 국장”으로, “호선하여 선정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교통과장, 재무과장, 녹지공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제3항 본문 중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산관리담당 주사로 한다”를 “공유재산업무 담당이 된다”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전단 중 “취득, 관리”를 “취득·관리”로 한다.

제6조의2 중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으로, “홈페이지”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한다.

제8조 중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를 “있어 관리하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로,

“집단화합으로써”를 “집단화하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의”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의 제목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총괄 재산관리관”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을 “기부채납계약서에는 기부한 자”로 한다.

①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사용·수익허가의”를 “사용허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수익”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조에”를 “제2조제4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조례 제27조”를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붙여 이 조례”를 “붙여”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5조 중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를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5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으로, “대부·매각하거나 대부료 감면이”를 “대부·매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를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지사”를 “경상남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재산평정가격”을 “재산 평정가격”으로, “토 석채취”를 “토석 채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평정가격”을 각각 “재산 평정가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집적 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군이”로,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따라 대부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채취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7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 을 “외국인투자기업 등” 으로,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를 “(전세금 납부방법  
의 사용허가 및 대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  
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33조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5호 중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전단 중 “말한다” 를 “말한다. 이  
하 같다” 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자치단체” 를 “군”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  
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6조관련)

1. 군본청 및 읍면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m<sup>2</sup>)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단독사무실)	부기관장실 (단독사무실)	국장실 (단독사무실)	부서장 (집무면적)	담당및직원 (집무면적)
군 본 청	99	33	33	17	7
읍 청 사	17	-	-	-	7
면 청 사	17	-	-	-	7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4~2.4m <sup>2</sup> /인	25~49명 2.6~1.5m <sup>2</sup> /인	50~99명 2~1.2m <sup>2</sup> /인	100~149명 1.6~1m <sup>2</sup> /인	150~199 1.2~0.9m <sup>2</sup> /인	200명이상시 면적 = 0.8m <sup>2</sup> ×사용인원
상황실(군)	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					
서비 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m <sup>2</sup> / 인	0.40m <sup>2</sup> / 인	0.33m <sup>2</sup> / 인		
	엘리베이터	(12.87~19.6m <sup>2</sup> ) × 대수				
식 당	1.63m <sup>2</sup>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m <sup>2</sup> × 공무원 수 × 0.15					
청소근로자휴게실	4명이하: 6m <sup>2</sup> 이상, 5명이상: 1.5m <sup>2</sup> × 근로자 수					확장가능
민 원 실	{(6.55m <sup>2</sup> ×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m <sup>2</sup> ~0.2m <sup>2</sup>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sup>2</sup> / 인	11.52m <sup>2</sup> / 인	8.64m <sup>2</sup> / 인			
자 료 실	(0.3~0.4m <sup>2</sup> ) × 공무원수					
창 고	0.72m <sup>2</sup> /인 ~ 0.85m <sup>2</sup> /인					
전 산 실	9.79m <sup>2</sup>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sup>2</sup>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1~7,500	7,501~13,000	13,001~18,000	18,001~23,000	23,001~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sup>2</sup>		800m <sup>2</sup>		1,000m <sup>2</sup>	
	층장비실	6.6m <sup>2</sup>		8.4m <sup>2</sup>		10.2m <sup>2</sup>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1~4,000	4,001~8,000	8,001~12,000	12,001~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1~20,000	20,001~24,000	24,001~28,000	28,001~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 30~40%]

2. 군의회 청사

(단위: m<sup>2</sup>)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원실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국장실 면적 준용		
회의실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m <sup>2</sup> 이상		
	회의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부속공간	부서장	17	집무면적	
	사무실	직원 수 × 7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원	의원 수 × 2.5	
		기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휴게실	의원	의원 수 × 2	
		직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청소근로자 휴게실	4명이하: 6m <sup>2</sup> 이상, 5명이상: 1.5x 근로자 수	확장가능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36~77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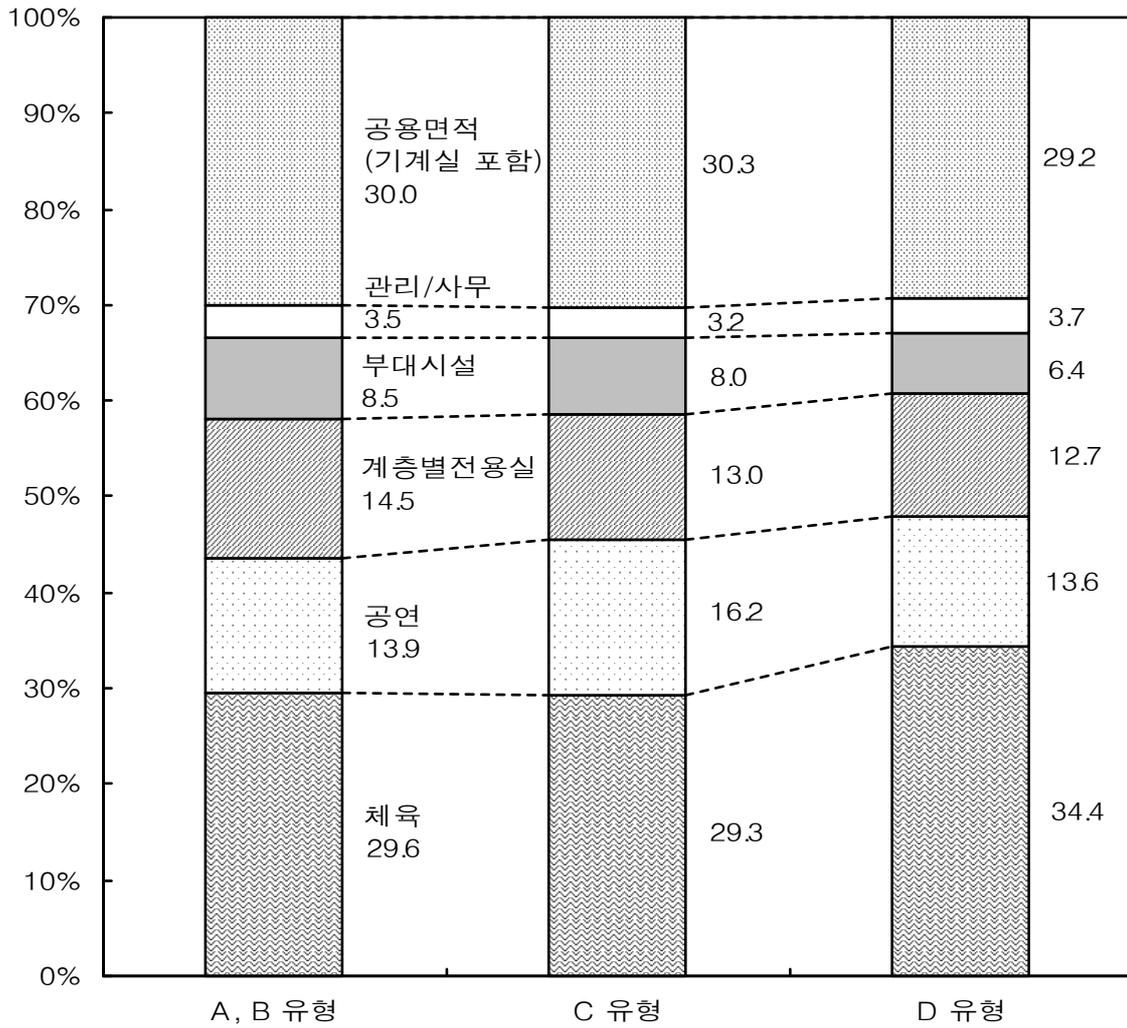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 3. 종합회관

####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li> <li>-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li> <li>-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li> <li>-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B	15-3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li> <li>-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li> <li>-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li> <li>-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li> <li>-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C	10-1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li> <li>-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li> </ul>
D	10만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li> <li>-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 인원내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li> </ul>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sup>2</sup>)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약실 (1)	14	12	10	15
	약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㉓	343	309	231	148
합 계	계 ㉓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m<sup>2</sup>)

구분	실 명	군보건소 면적기준	
진료 활동	접수 / 수납	13.86	비 고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36.00	
	약국조제실	11.88	
	약국창고	11.88	
	일반진찰실	35.64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방사선실	49.92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 무 부 문	d	소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	
		다목적실	108	
		창고	52.47	
		여자휴게실	40	
		당직실	13.86	
		화장실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44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m<sup>2</sup>)

구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상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예비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리책임) ① <u>군수는 고성군 공유 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 략)</p>	<p>제2조(관리책임) ① <u>고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u>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부서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u></p> <p>1. <u>고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u></p> <p>2.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lt;신 설&gt;</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부군수가 되고</u>----- ----- <u>담당 국장</u>----- ----- ----- <u>호선(互選)한다.</u></p> <p>③ <u>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교통과장, 재무과장, 녹지공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u></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④ <u>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u></p>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⑤ (생략)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② (생략)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의3(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후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⑤ -----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개의하고-----.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공유재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의3(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 <삭제>
3. (현행과 같음)
- <삭제>

5. · 6. (생 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6.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및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5. · 6.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취득 · 관리  
-----  
-----  
-----.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  
-----  
-----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  
----- 누리집(홈페이지) -----  
-----.

제8조(재산의 집단화) ----- 있어 관리  
하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  
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 집단화하여 -----  
-----.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 법 제10조의2 ----- 공유  
재산관리계획에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 않고 -----  
-----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생략)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안된다.

1. 2.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

-----  
----- 총괄재산관리관-----  
-----.

② ----- 제1항-----  
-----  
-----.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현행과 같음)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기부채납계약서에는 기부한 자-----  
-----  
-----.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허가 -----  
-----.

1. 2.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 ① -----  
----- 사용허가-----  
-----.

1. 사용허가 -----

적

2. ~ 4. (생 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  
금의 사용자 부담

7. (생 략)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  
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생 략)

③ 영 제14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이 조례 제27조 및 제  
30조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⑤ 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  
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  
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

2.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가 -----

6. 사용허가 -----  
-----

7. (현행과 같음)

② -----  
-----  
-----.

1. -----  
---- 제2조제4호에 -----

2. (현행과 같음)

③ -----  
----- 제27조 -----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4조제8항-----  
-----  
-----  
----- 붙여 ---  
-----  
-----.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 사용허가부---  
-----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 5. (생략)

② (생략)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영 제3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하

-----  
 -----  
 -----  
 -----.  
 -----  
 -----  
 -----.

1. ----- 사용허가 -----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  
 -----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 대부·매각 -----

거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공유재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일반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  
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  
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  
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 6.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  
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  
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 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  
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  
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  
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 2.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  
-----.

1. (현행과 같음)
2. ----- 제7  
조, 제7조의2 및 제8조-----

3. -----  
---- 제2조제13호-----

4. -----  
경상남도지사-----  
-----

5. ·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 재산 평정가  
격-----  
-- 토석채취-----

② -----  
----- 재산 평정가격-----  
-----.

1. · 2. (현행과 같음)

③ -----

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 3. (생 략)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생 략)

2.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 6. (생 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재산 평정가격-----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재산 평정가격-----  
-----.

----- 재  
산 평정가격-----  
-----.

⑤ -----  
----- 재산 평정가격-----  
-----.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  
-----  
-----

3. -----  
----- 벤처기업집적시설  
-----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군이 ----  
----- 벤처기업 창  
업자 또는 지원 관련 -----

5. · 6. (현행과 같음)

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⑦ (생략)

⑧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대부분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채취물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  
-----  
-----

⑦ (현행과 같음)

⑧ ----- 따른 -----  
-----  
-----  
-----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삭제>

③ 제2항의 채취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7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  
-----  
-----.

<삭 제>

<삭 제>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7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  
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  
의 1
  -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는 부지평가액 전액
  -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  
는 경우
    -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  
의 1
    -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  
의 1
    -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  
는 경우
    -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  
의 1
    -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  
의 1
    -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  
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  
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  
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  
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  
----- 사용허가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 사용허  
가-----  
-----.

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연도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  
----- 사용허가 -  
-----  
-----  
-----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군이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6.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7. ~ 11. (생략)

경우)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  
-----

6. -----  
-----  
----- 말한다. 이하 같다-----  
-----  
-----

----- 군 -----

7. ~ 11. (현행과 같음)

**참고**

**관계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시행일: 2023. 1. 1.]

-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ㄱ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4조(사용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

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2-2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12. 5.

고 성 군 수

1. 허가번호 : 고성2022-10호
2. 하천의 명칭 : 고성천(지방하천)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가뭄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치 :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433-1번지 일원
  - 면적 : 125.8㎡(영구점용 25.7㎡, 일시점용 100.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점용기간 : 2022년 12월 5일 ~ 영구(5년마다 연장신청)
7. 문의처 : 고성군청 건설과 하천관리담당(☎055-670-2763)

허가번호 제2022-10호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주 소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		
성 명 (기 관 명)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장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612-83-04353		
하 천 명 칭	고성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433-1번지 일원		
점용면적 및 목적	점용면적: 25.7㎡ 점용목적: 가뭄 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 하천점용		
최 초 허 가 일	2022년 12월 5일		
점 용 기 간	2022년 12월 5일 ~ 영구(5년마다 연장신청)		
허 가 조 건	뒷면 참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22년 12월 5일

# 고 성 군 수

## 허 가 조 건

1. 하천의 점·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2. 공사시행 전에 인근 농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사업설명과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훼손한 제방 및 기타 시설물은 작업완료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점·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 허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과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 해결 하여야 한다.(강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4. 본 공사를 시행함에 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비산먼지 흙탕물 등으로 인한 오염과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하천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관리청의 직권으로 허가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가. 본 허가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때
  - 나.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불이행 할 때
  - 다. 하천정비공사의 시행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할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사업 등 포함)
7. 공익사업 시행 시(하천관리청의 이설요구가 있을 시)는 피 허가자의 점용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설하여야 한다.
8.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4항에 의거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9. 홍수 및 우천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수위 변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피해 보상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본 조건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청 및 하천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끝.

